

호남지방통계청 공무원근로자(통계조사관) 신규채용 공고

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공무원근로자(통계조사관)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4. 2. 8.
호남지방통계청장

1. 채용인원

채용구분	채용부서	채용인원	채용일	계약방법	근로조건	임금*
공무원근로자 (통계조사관)	제주사무소	1명	2024.3.4. (월)	근로계약 (만 60세 정년)	1주 40시간, 주5일 근무	기본급 1,838천원(호봉제), 급식비 140천원, 표본관리비 200천원 등 (별정수당 및 명절휴가비 별도)

- 근무장소: 제주사무소(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 합동청사)
- 수습기간: 2024. 3. 4. ~ 2024. 6. 3. (3개월)
 -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적격성 심사 후 정규 임용(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)

2. 담당업무

채용구분	담당업무	주요담당업무
통계조사관 (공무원근로자)	경상조사 및 연간·특별조사 전반	· 해당사무소 관할지역내 협지 조사업무 수행 - 제주사무소: 제주시, 서귀포시 · 주요업무: 대상처 방문조사(조사표 작성), 응답자 설득, 전화 질의 조회, 명부 수정보완, 전산처리 등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조사 업무 상시 수행 등 · 주요조사: 가계동향조사, 경제활동인구조사, 집세조사, 광업제조업조사, 서비스업동향조사, 농가경제조사, 농축산물생산비조사, 농작물생산조사 등(통계청 홈페이지 참고) ·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 - 듣고말하기: 대화 및 설득을 통해 조사업무 완수 - 건기: 일반적인 보행 - 트는힘: 조사표류, 태블릿PC 휴대가능 - 시력: 조사표의 비교적 작은 글자를 읽을 수 있음 - 손작업: 조사표 작성 및 태블릿PC 사용 가능 · 기타 조사관련 지시사항 처리 등

3. 채용방법

1차 서류전형 → 2차 면접전형 → 최종합격자 발표 → 결격사유 유무 정보 확인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) → 이중취업 여부 확인(검입 불가) → 채용 확정(수습기간: 3개월) → 적격성 심사 → 정규 임용

- 1차 서류전형
 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<채용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선발인원>

채용인원(분야별)	서류전형 선발인원
1명	5배수

- 2차 면접전형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 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공무원수행자로서의 소양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-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
 -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
 - 면접(2차)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 -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의결에 따른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4. 심사일정

- 접수기간 : 2024. 2. 8.(목) ~ 2024. 2. 22.(목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E-mail: naga0163@korea.kr
 - 방문 접수는 평일 09:00 ~ 18:00 내에 접수 (접수시 접수확인 문자메시지 발송)
 -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(접수시 접수확인 문자메시지 발송)
 - E-mail 접수는 마지막 날 18:00 내에 접수 (접수 시 확인 메일 발송 예정)
 - **접수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반영되지 않음**
 - 접수장소 : 아래 참조

담당자	주소	전화번호
조사지원과 나선희	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(동천동 584) 1층 통계청 고객지원실	전화: 062-370-6022 naga0163@korea.kr

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: 2024. 2. 26.(월) 17:00
 -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<http://kostat.go.kr> 채용정보(합격·공지)에 공고
- 면접심사 일자 및 장소 : 2024. 2. 28.(수), 장소: 통계청 제주사무소
 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세부일정 공고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4. 2. 28.(수) 18:00 공지 및 개별 문자 안내
 -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<http://kostat.go.kr> 채용정보(합격·공지)에 공고

5. 응시 자격요건(판단기준일: 공고일 현재)

□ 필수요건
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9세 이상이며 만 60세(정년) 미만인 자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저촉되지 않는 자
-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 - 이중 취업(겸업) 금지
- 채용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·퇴근
- (통계조사관 해당) 출장지역 업무 수행 가능한 자

채용 결격사유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
 - 피성년후견인
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 -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-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예시 :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제3(장애인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등)

□ 가점 및 우대요건

- 관련분야 근무경력 (통계조사, 통계기획·분석, 통계자료처리등)
 -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우대 :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가점 부여
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4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가점 부여

※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저소득층, 다자녀 양육자, 북한이탈주민 우대 : 1차 전형에 반영
 - 저소득층의 범위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0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
 - 다자녀 양육자 : 만 20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
 - 북한이탈주민 :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)

- 장애인 우대 : 1차 전형에 반영
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
□ 불합격 처리 대상

- 채용서류 미비자, 거짓 작성자(2년간 불합격 처리)
-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
- 정당한 사유* 없이 최근 2년간 통계청(소속기관 포함)과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한 자
 - * 불가피한 경우로 합리적인 사유(질병, 가족간호, 타지역 이사, 통계청 및 소속기관 정규직 채용 등)
 - **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(교육포함) 이전에 포기한 경우는 제외
-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6. 제출서류

□ 필수 제출 서류: 자필서명 필수(미 서명시 점수 불가)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-첨부1
- ② 응시원서-첨부2
- ③ 자기소개서-첨부3
-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·이용 동의서-첨부4

□ 추가 제출 서류(해당자에 한함)

-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호남지방통계청 경력 제외
 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(2023. 11. 9. 이후)
 -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경력에 한 함.(2022. 2. 9. 이후)
- 자격사항 증빙서류 (※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-첨부5)
- 우대사항 증빙서류(※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-첨부5)
- 국가유공자 등(취업 지원 대상자) 가점(5-10점)/ 제출서류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

□ 평가기준 상세

- 자격증 점수(5점)

자격증	점수
- 사회조사분석사 1급,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보안기사	5
- 사회조사분석사 2급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컴퓨터 활용능력1급, 전산회계운용사 1급	3
-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전자계산기기능사, 전산회계운용사 2·3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서	1

※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

- 기타 점수(5점)

항 목	점 수	내 용	비 고
저소득층	2	- 기초생활수급자 - 차 상 위 계 층 - 1부모가족 세대주 ※ 관련 증빙서류 제출	※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합계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가능
다자녀	2	- 다자녀(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) ※ 주민등록등본 제출	
북한이탈주민	2	- 북한이탈주민 ※ 북한이탈주민 확인서	
장애인	3	- 장애인등록증소지자	

- 국가유공자 등(취업 지원 대상자) 가점(5-10점)/ 제출서류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

7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

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
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조치실시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
-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,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
-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'24. 2. 22.(목) 18시' 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-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(미지참 시 응시 불가)
- 최종 합격자는 호남지방통계청 해당(채용)부서에서 3개월간 수습을 진행하며, 종료 10일 전 수습기간 평가를 통하여 정규채용 여부를 결정함
※ 평가결과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- 문의사항: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[나선희\(062-370-6022\)](tel:062-370-6022)

<첨부1 필수>

응시자 제출서류 목록

채용구분	성명	서명
제주사무소 공무직근로자(통계조사관)		(서명)

■ 작성목록(총괄표)

목 록	제출 여부
1. <첨부2> 응시원서(필수)	
2. <첨부3> 자기소개서(필수)	
3. <첨부4>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필수)	
4. <첨부5>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해당자에 한함)	
5. 일반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	
6. (우대사항)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	
7. (우대사항) 기타 증빙자료 사본(해당자에 한함) - 저소득층, 다자녀양육자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대상자)	

* 제출서류에 대하여 '제출 여부'란에 "○" 표시 후 함께 제출

** 등기우편 제출 시,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(스테이플러 사용금지)

<첨부4 필수>

(채용 전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통계청은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22조에 따라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[필수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	
공통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(휴대전화, 전자우편)	채용절차 진행, 본인확인, 이종취업여부 확인, 경력증명서 발급용 기록관리	미채용자	「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
해당자 자격·경력·학위·저소득·다자녀·북한이탈주민·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대상자)·비자종류(외국인)		채용자	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 미동의

[필수]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	
<해당자> 국가유공자정보, 장애정보, 북한이탈주민정보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법적사무처리	미채용자	「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
		채용자	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 미동의

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	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	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 미동의

2024 년 월 일

성명: (서명)

호남지방통계청장 귀하

<첨부5 해당자에 한함>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통계청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관리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이용 대상	행정정보명	이용 대상	행정정보명
<input type="checkbox"/>	국가기술자격증(대한상공회의소)	<input type="checkbox"/>	장애인증명서
<input type="checkbox"/>	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	<input type="checkbox"/>	주민등록표 등·초본(다자녀 양육자)
<input type="checkbox"/>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	<input type="checkbox"/>	취업지원대상자증명
<input type="checkbox"/>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	<input type="checkbox"/>	한부모가족증명서

*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체크(☑)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주민등록번호	-
--------	---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4 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전화번호 :